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국금지 대상에 임금등 체불사업주 추가〉
■ 박군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75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근혜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4. 9. 25.
3. 회 부 일: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두어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그 제재의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4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임금등 체불사업주를 출국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② ~ ⑤ (생략)	제4조(출국의 금지)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u>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u> <u>주</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국세·관세·지방세를 내지 아니한 사람,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

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¹⁾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이하 “채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등 채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²⁾ 2024. 10. 22. 개정된 「근로기준

1)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채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³⁾

[2024. 10. 22.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조항]

제43조의7(출국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시행일: 2025. 10. 23.]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2024. 10. 22. 개정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출국의 자유는 헌법(제14조)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⁴⁾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국민의 출국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⁵⁾

따라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 임금체불을 제재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

3) [2204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 2024. 9. 26., 공포: 2024. 10. 22.

4) 「대한민국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5) [서울고등법원 2012. 7. 19. 선고 2011누43180 판결]

치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 존재할 수 있으나, 현행법(제4조)상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도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한 점,⁶⁾ 2024. 10. 22.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현행법상 이미 명단공개, 체불자료의 제공, 형사처벌 등의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이보다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 하에 개정된 점⁷⁾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2024. 10. 22. 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은 2025. 10. 23.부터 시행됨⁸⁾에 반하여,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의 개정조항이 개정안보다 먼저 시행되는 경우, 현행법상 출국금지의 근거 규정이 없어 개정 「근로기준법」을

6)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

7) [2204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中

8)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4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습체불사업주의 체불횟수 및 체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는 경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체불횟수와 체불액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개정안 시행일은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인 2025. 10. 23.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령상 명단 공개는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⁹⁾ 출국 금지의 침익적 성질을 감안할 때,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할 경우, 이미 명단공개 결정이 이루어져 3년간 공개되고 있는 사업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4조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3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기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실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